

\_\_\_\_\_



297 2011. 5. 4( )

.....


**공 고**

2011-310

-----2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:

:

( 309-4071)

\_\_\_\_\_

**공 고**

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5월 4일  
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

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10호

**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지방의회 의원들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1항에 있는 구의회 의원들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현행 조례에 “당해 동에 주소를 둔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며”를 “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임기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”으로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제한 요인을 해소함.(안 제17조제1항)

**3. 의견제출**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[참조 : 의회사무국(전화 : 051-309-4094, FAX : 051-309-4099) 부산광역시 북구 강변2길 6(구포동 1124-1번지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전문 및 자세한 사항은 북구 홈페이지 ([www.bsbukgu.go.kr](http://www.bsbukgu.go.kr))고시·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